

자격상세정보

소방안전교육사

Fire Safety Educator

관련부처 소방청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일정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임)

구분	접수기간	서류제출기간	시험일정	의견제시기간	최종정답 발표기간	합격자 발표기간
2026년 12회 1차	2026.06.08 ~2026.06.12 빈자리 추가접 수 기간 2026.08.06 ~2026.08.0 7		2026.08.15	2026.08.15 ~ 2026.08.21	2026.09.16 ~ 2026.11.14	2026.10.14 ~
2026년 12회 2차	2026.06.08 ~2026.06.12 빈자리 추가접 수 기간 2026.08.06 ~2026.08.0 7		2026.08.15	2026.08.15 ~ 2026.08.21		2026.12.09 ~

시험정보

시험과목 및 배점

□ 시험과목 및 방법

구분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제1차 시험	1. 소방학개론 2. 구급 및 응급처치론 3. 재난관리론 4. 교육학개론 (4과목 중택 3과목)	과목 당 25문항 (총 75문항)	75분 (09:30~ 10:45)
제2차 시험	1. 국민안전교육 실무	-	-

합격기준

□ 합격기준

구분	합격결정기준
제1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제2차 시험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사람

□ 면제 대상자

○ 시험의 일부 면제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

□ 결격사유기준일 : 최종 합격자 발표일

- 소방기본법 제17조의3(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 ※ 해당시험 정보 내용은 추후 법령 개정 및 시험공고 시 변경될 사항을 반영

□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관련법령)

○ 결격사유(소방기본법 제17조의3) 소방기본법 제17조의2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 기준

○ 응시자격(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2] <개정 2023. 9. 12.>

1.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2주 이상의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학과, 응급구조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또는 소방안전 관련학과 등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학과에 개설된 교과목 중 소방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총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 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6.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류 중 중직무분야의 안전관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8.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9.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 「의료법」 제7조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간호업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업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업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나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
1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3호나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1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된 후 5년 이상 의용소방대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
17.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위험물 중직무분야의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1차 시험: 30,000원

제2차 시험: 25,000원

취득방법

소방청장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1,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소방청에서 실시하는 신원조회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결정되
격을 취득

인쇄

↑
위로

<

>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1644-8000 (운영시간 09:00 ~ 18:00, 유료)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획득](#)

관련사이트



이동

국가전문자격 홈페이지



이동

© 2024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All Rights Reserved.